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이상식 · 양부남 · 박용갑
김남근 · 김준환 · 김현정
복기왕 · 박해철 · 신정훈
권칠승 · 이정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,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 · 지휘 · 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민주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, 공정성,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,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상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910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9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치안정감으로”를 “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치안정감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수사본부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가수사본부장)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, 국가수사본부장은 <u>치안정감으로</u> 보한다.	제16조(국가수사본부장) ① ----- ----- ----- <u>국회의 인사청</u> <u>문을 거쳐 치안정감으로</u> ----- -.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